



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

-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19. 10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
[복지정책과]

-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복지정책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

- 보훈가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책임지는 보훈복지 강화를 위해 보훈정책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 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훈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보훈정책자문위원회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 등 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4조에서는 공정한 자문을 위한 위원의 제척·회피·기피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사유에 대해 기재하였으며,

-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 요건과 의결사항에 대해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.
- 안 제9조에서는 보훈정책에 대해 전문가, 이해관계인과 구민 등에게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.
-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
-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19. 7. 22일부터 8. 12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,
-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에도 의견이 없었으므로
- 2019. 10. 8일 조례 · 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임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□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와 따뜻한 보훈 복지 실현에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해 줄 『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정책자문위원회』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 제정을 추진하오니,
-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

□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0072036
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: 2019. 10. /8.
제출자: 달서구청장
(복지정책과장)

1. 제정이유

- 보훈정책에 대해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훈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목적, 기능, 구성(안 제1조 ~ 제3조)
- 위원의 제척, 위원장의 직무, 임기, 위원의 해촉(안 제4조 ~ 제7조)
- 회의, 의견 청취(안 제8조 ~ 제9조)
- 재정 지원, 수당 등(안 제10조 ~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5조, 제19조
- 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
- 3)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: 2019. 7. 22.~8. 12.
 - 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비용추계서: 생략(연평균 비용 5천만원 미만)
- 4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5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보훈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보훈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훈정책자문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.

1.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"구"라 한다) 보훈정책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
2. 구 보훈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보훈문화 창달 및 애국심 고취에 관한 사항
4. 구 보훈정책에 관한 중요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보훈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,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보훈분야에 관하여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2. 보훈 관련 단체·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
3.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

4. 그 밖에 보훈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, 간사는 보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.

제4조(위원의 제척 등) ① 위원이 해당 자문 대상과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또는 다른 이해 당사자의 대리 관계인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척 된다.
② 이해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임기)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,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스스로 사임하고자 할 경우
2.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과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
3.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
4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1.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2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
 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의견 청취) 위원회는 보훈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책 세미나 및 포럼 등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, 이해관계인과 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.

제10조(재정 지원) 구청장은 제9조의 정책 세미나 개최 등 위원회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 계 법령]

□ 국가보훈 기본법

-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19조(예우 및 지원)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.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- 제2조(예우의 기본이념)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(戰歿軍警)과 전상군경(戰傷軍警)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(龜鑑)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,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(榮譽)로운 생활이 유지·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.

- 제3조(정부의 시책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·발전시키며,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.

□ 달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5조(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)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예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
2.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·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
3.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적 게재
4.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·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
5.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, 보훈관련 기념일 및 각종 행사시 위문
6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
7.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기 위한 “국가유공자의 집” 문패제작 증정
8. 구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·보훈의 달 행사시 희생·공헌자의 업적선양